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 : 723-5303 rights@pspd.org)

제 목 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보도자료

날 짜 2000. 5. 15. (총 5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벌금 예납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위반, 예납강요 등 시행상 문제점도 커 -

일시 : 2000. 5. 15(월)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기소 전단계에서 피의자들로부터 벌금을 받는 현행 벌금 예납제도는 검찰의 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2. 참여연대는 이날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예납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헌법소원청구인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법무부 장관 앞으로 벌금 예납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예납제도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미리 받게 됨으로써 국가는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반대로 납부자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며, 판결을 통해 벌금이 감액되어도 환급액의 이자분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부당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5.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7조가 강제예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검찰직원들이 예납실적을 올리기 위해 벌금예납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일선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벌과금 예납고지서에도 '벌금이 확정되어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에 지명수배되

고 노역장 유치되니...'라고 표기하여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예납을 하지 않으면, 인신구속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이 크다고 밝혔다.

6. 참여연대는 "벌금 예납제도가 없으면, 검찰의 징수사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는 별도의 인력증원과 예산배정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징수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벌금 예납제도 폐지 의견서
2. 일선 검찰청 벌금 예납고지서 사본 1부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의 견 서

-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벌금 예납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1. 벌금예납 제도의 근거

벌금예납 제도란, 말 그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검찰이 벌금을 미리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는 단계에서 피의자들로부터 벌금을 예납받고 있습니다. 현재 벌금예납 제도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 있습니다. 법무부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의 "검사는 형집행의 효율화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구할 피의자에게 그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납할 것을 고지할 수있다"라는 규정이 벌금예납 제도의 근거입니다.

2. 현행 벌금예납 제도의 위헌성

이러한 벌금예납 제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벌금도 형벌인 이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형이 집행된다는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기소단계에서 벌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것은 유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벌금예납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행 벌금예납 제도는 단지 법무부령에만 근거가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3. 현행 벌금예납 제도의 부당성

벌금예납 제도는 제도 자체로 보아도 정당하지 못한 측면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판결 확정뒤 납부하면 되는 벌금을 미리 받음으로써 국가는 이자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반대로 납부자들은 이자상당액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의해 벌금액이 감액되어 벌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에도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환급할시 이자까지 반환하는데, 벌금의 경우에만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까지는 정확한 예납율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예납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면서 예납받는 경우에는 거의 100% 예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피의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4. 현행 벌금예납 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

한편 벌금예납 제도는 운용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7조가 강제예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검찰직원들이 예납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의자들에게 벌금예납을 사실상 강요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선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벌과금 예납고지서의 표현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납고지서에는 몇월 몇일까지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굵은 글씨로 "벌금이 확정되어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에 지명수배되고 노역장 유치되니 기일엄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용어에 익숙치 않은 대다수 국민들은 '예납고지서' 문구의 의미를, 예납을 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나 노역장유치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납고지서의 표현을 애매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예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벌금을 예납받도록 하는 것은 검사나 검사실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검사의 기본업무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벌금예납에 대한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 결 론

근본적으로 보면 벌금예납제도는 징수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용인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벌금 예납제도가 없으면, 검찰의 징수사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징수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헌법상의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벌금예납 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